



고용노동부

## 고 용 노 동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소위 '네트제 계약'으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례 관련 협조요청

---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에서 임금은 '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,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'으로 정의되어 있으며,
  - 또한, 퇴직급여, 각종 재해보상 등 지급을 위한 **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**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**공제되기 전(소위 '공제 전 금액')**을 의미합니다.
3. 한편, 주로 **보건의업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일정한 세후 임금을 보장하는 소위 '네트제(공제 후 금액) 계약' 형태의 근로계약 관행이** 있어온 바,
  - \* 네트제 계약: ①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, ②그에 따라 근로자는 위 제세공과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③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기로 하는 계약방식
  - 이러한 근로계약 형태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, 최근들어 소위 '네트제 계약'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부에 **다음과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을 빈번하게 제기하고** 있습니다.
    - 가.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**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은 '공제 전 금액'임에도 '공제 후 금액'으로 잘못 산정하여 퇴직금 등을 적게 지급한 경우**
    - 나. 「근로기준법」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**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'네트제 계약'을 이유로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**
4. 이에 우리부는 소위 '네트제 계약'을 잘못 이해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**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이며,**
  - 귀 협회에서도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공지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## 고용노동부장관



수신자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 대한의사협회

주무관

조윤서

행정사무관

김주홍

근로기준정책 전결 2024. 1. 9.

과장

박종환

협조자

시행 근로기준정책과-111

(2024. 1. 10.)

접수

우 30117

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

/ 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

전화번호 044-202-7548

팩스번호 044-202-8071

/ [jyonsoe@korea.kr](mailto:jyonsoe@korea.kr)

/ 비공개(5)